

재해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정성 -이재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Promptness and Fairness of the Disaster Relief Donations Support -Focused on Perception of Disaster Victims and Civil Servants of Local Government-

이은애*, 양기근**
전국재해구호협회*,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Eun-Ae Lee(analoglee@hanmail.net)*, Gi-Geun Yang(withgg@wku.ac.kr)**

요약

재난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에 따라 각종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을 지급받는 이재민과 지급하는 담당공무원의 의연금 제원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재민은 의연금 배분의 실질적 수혜자이고, 시군구 공무원은 의연금 배분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대상자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 그룹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도출에 있어서 이들의 인식은 중요한 분석의 단초가 되므로 재해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재해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들의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중심어** : | 재난 | 이재민 | 의연금 | 인식 |

Abstract

Disasters are subject to occur repeatedly ever year. Disaster relief donations are paid in terms of scale of damage. Empirical studies on this issue have not been substantially implemented, in particular, on perceptions by disaster victims and civil servants of local government. Disaster victims and civil servants of local government are seen as the key groups for the support system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as the former is actual beneficiaries and the latter is to investigate concerned data on decision making for support system. In the regard, in the study, problems and improving directions for more efficient support system are analysed and suggested based on the survey of perception of disaster victims and civil servants of local government. Conclusion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also included in the concluding section.

■ **keyword** : | Disaster | Disaster Victims | Disaster Relief Donations | Perceptions |

I. 서론

오늘날 이상기후와 기상재해의 발생 등으로 재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natural disaster), 인적재난(man-made disaster), 사회적 재난(social disaster)으로 분류되며, 이들 재난이 복합적으

* 본 논문은 2010년 국가위기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발전시킨 것입니다.

접수번호 : #110330-002

접수일자 : 2011년 03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6월 21일

교신저자 : 양기근, e-mail : withgg@wku.ac.kr

로 나타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은 해마다 지진, 가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등의 발생으로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고 있다[1]. 이러한 재난 중 자연재해의 발생빈도는, 1980년대 초반에 평균 120건에서 최근 약 50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1995-2004년)간 자연재해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는 약 2억 5,400만 명으로, 과거 10년(1985-1994년)의 약 1억 7,400만 명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2].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연평균 사망 72명, 재산피해 2조 460억원이 발생하였고[3], 인적재난으로 연평균 사망 7,578명, 재산피해 5,800억원이 발생하였다[4]. 특히,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246명의 사망자와 약 5조 1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2003년 태풍 ‘매미’ 발생 시에는 131명의 사망자와 약 4조 2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후에도 2006년의 태풍 ‘에위니아’로 62명의 사망자와 2,481명의 이재민 그리고 1조 8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5][6].

이렇듯 해마다 재난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규모 내지 피해액은 국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 사항이다. 재난의 피해규모에 따라 각종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이 지급된다. 그러나 정작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을 지급받고 지급하는 재해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는 많지 않았다. 다만, 최근 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로는 재해구조품 전달과 관련한 흥영교 외[6]의 연구와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이재은[7]의 연구 등이 있다.

의연금은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 등에 대한 의연금, 주택침수·파손에 대한 의연금, 생계지원 대상 피해에 대한 의연금 등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재민은 의연금 배분의 실제적인 수혜자이고, 시군구 공무원은 실제 의연금 배분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대상자에 대한 적법성 등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핵심주체이다. 따라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도출은 이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해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재해의연금의 의의와 유형

표 1. 재해의연금 지원의 유형

공간	구분	단기	중장기
현재 재해발생 지역		응급의연금 지원	재건의연금 지원
과거 재해발생 지역		생활의연금 지원	복지의연금 지원

자료: [9]에서 인용.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의연금(義捐金)은 사회적 공익이나 자선을 위해 내는 돈으로 정의된다[8]. 즉, 의연금은 재난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공익이나 이재민에 대한 자선을 위하여 내는 돈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해의연금은 성금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성금의 다양한 유형중 하나가 의연금이며, 재해의연금은 이러한 의연금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7].

이러한 재해의연금이 지니는 특성을 이재은[7]의 연구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의연금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이재민에 대한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해의연금은 전달자가 임의대로 자신의 활동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재난 피해 상황 하에서 이재민을 위한 자선의 목적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둘째, 재해의연금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모금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성금은 모집 및 홍보 활동이 있으나, 재해의연금은 그 성격상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의연금 모금을 위한 모집 및 홍보가 어렵고,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신속한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재해의연금은 일반적으로 모집의 과정에 있어 언론과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모금이 이루어짐에 따라 홍보 등이 필요 없어 별도의 모집경비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셋째, 재해의연금의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도보다 공익적 부분이 더 고려된다. 넷째, 재해의연금은 모금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금기관은 단지 전달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재은·유현정[9]은 재해의연금의 공간적 지급 범위(현재 재해발생 지역과 과거 재해발생 지역)와 시간적 지급 범위(단기와 중·장기)를 기준으로 재해의연금의 지원 유형을 응급의연금 지원, 재건의연금 지원, 생활의연금 지원, 복지의연금 지원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현재 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단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응급의연금(emergent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즉 현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이다. 둘째, 현재 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재건의연금(recover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 발생한 재난 피해로 인한 이재민의 생활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경우이다. 셋째, 과거 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단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생활의연금(livelihood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과거에 발생한 재난 피해로 인해 정상생활로 회복되지 못한 이재민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을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과거 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복지의연금(welfare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과거에 발생한 피해로 인해 단기적 지원을 통해 정상생활로 복귀하기 어려운 이재민에게 복지 사업을 통한 서비스 지원에 의해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2. 의연금 지원 대상자 및 담당자 인식의 중요성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달리 현재 의연금은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 지급, 이재민 재해구호를 위한 물품구입, 의연금품 모집·배분·관리 경비, 협회의 운영, 기타 소

방방재청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5가지 사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 §4①)[10]. 의연금 지원은 재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 등에 대한 의연금, 주택침수·파손에 대한 의연금, 생계지원 대상 피해에 대한 의연금 등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의연금 지원 대상자는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 79호)」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우선, 재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 등에 대한 의연금은 사망자·실종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부상자의 경우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재해로 인한 주택파손·침수에 대한 의연금은 주택 전과, 반과, 침수 이재민에게 지원되며 주택전과는 세대당 500만원, 주택반과는 세대당 250만원, 주택침수는 세대당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재해로 인한 생계지원 대상 피해에 대한 의연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 [11] 제4조 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를 받은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에게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연금 지원에 있어서 이재민과 공무원의 인식이 중요한 것은 첫째, 이재민은 의연금 배분의 실제적인 수혜자이고, 둘째, 실제 의연금 배분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대상자에 대한 적법성 등의 판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연금 지원은 피해지역 주민이 피해조사서를 작성하면, 해당 지역의 읍면동 공무원이 피해조사서의 내용에 대해 검증한 후 대상자가 확정된다. 현재 의연금 지원의 대상자는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조사 과정이 의연금 지원을 위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조사는 재난지원금 항목 소관부처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지식경제부 등에서 각기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피해조사의 집계는 재난관리 부서에서 이루어진다. 재난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의연금 지원 대상 재해가 확정이 되면, 의연금 담당 부서에서 의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재난관리 부서에 요청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 배분위원회로 송부 된다. 즉, 의연금에 관련한 피해조사는 재난관리부서에서 집계되고, 그 집계된 자료를 기반으로 의연금 담당 부서에서 취합되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연금은 재해구호협회에서 의연금 지원이 확정된 이재민에게 개별적으로 입금이 되지만, 주로 의연금에 관련한 상담 등은 시군구의 의연금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연금의 배분에 관련한 만족도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식이 중요하며, 이러한 세 집단 간의 인식을 조사하여, 의연금 지원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실증분석

1. 조사 설계

1.1 조사 내용

본 조사는 의연금 지원에 대한 이재민과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집함으로써 의연금 지원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의 획득에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달성하기 위한 설문내용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의연금에 대한 이재민의 만족도, 의연금 지원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의연금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재민과 담당공무원의 의연금 지원의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설문조사는 규격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재민에 대해서는 전화조사를,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편 및 이메일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11월 한 달간 이었다.

1.2 조사 대상 선정 및 표본의 특성

1.2.1 재해지역 주민

2009년 7월 11일부터 16일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6,868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주택침수로 전체 4,060세대였고, 그 다음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2,023세대, 농어가 피해는 652세대, 주택전과·반과는 111세대였으며 인명피해는 10명이었다.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부산이 2,759세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 1,816세대, 경남 1,254세대, 전남 277세대, 서울이 251세대, 충남 213세대, 전북 116세대의 순으로 많았다. 그 외 인천 58세대, 광주 46세대, 강원 29세대, 충북 26세대, 경북 7세대, 대전 4세대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피해주민 6,868세대를 대상으로 지역별, 피해유형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그중 1,000여명에 대해 전화면접을 실시하여 총 307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특성(이재민)

구 분	빈도	%	
전체	307	100.0	
피해유형별	주택전반파	8	2.6
	주택침수	182	59.3
	소상공인	87	28.3
	농어가	30	9.8
지역별	서울	11	3.6
	인천/경기	85	27.7
	부산	124	40.4
	대전/충청	12	3.9
	광주/전라	19	6.2
	대구/경상	55	17.9
	강원/제주	1	0.3
성별	남성	207	67.4
	여성	100	32.6
연령별	20대	15	4.9
	30대	77	25.1
	40대	111	36.2
	50대	94	30.6
	60세 이상	10	3.3

1.2.2 담당공무원

본 조사의 대상자는 2009년 11월 당시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의연금 담당 공무원이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한 달간이었으며, 재난관리 부서 공무원 293부, 의연금 담당 부서에 248부를 배포하여, 재난관리 담당자의 경우 144부, 의연금 담당 공

무원의 16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조사에서 재난 관리 담당과 의연금 담당 공무원은 실제로 그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재난관리 부서는 시군구마다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등 각기 상이하고, 그리고 의연금 담당 부서는 실제 의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며, 의연금 대상자에 대한 자료 취합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와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조사에서 피해조사 부서를 재난관리 담당으로, 의연금 대상자 취합부서를 의연금 담당으로 각기 분리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응답자의 특성(공무원)

구분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의연금 담당 공무원		
	빈도	%	빈도	%	
전체	144	100	163	100	
직급별	8-9급	50	34.7	44	27.0
	6-7급	81	56.3	105	64.4
	5급	9	6.3	0	0
	4급 이상	1	0.7	0	0
	무응답	3	2.1	14	8.6
지역별	서울	41	28.5	13	8.0
	인천/경기	19	13.2	21	12.9
	부산	12	8.3	13	8.0
	대전/충청	14	9.7	22	13.5
	광주/전라	18	12.5	25	15.3
	대구/경상	26	18.1	44	27.0
	강원/제주	11	7.6	11	6.7
	무응답	3	2.1	14	8.6
성별	남성	111	77.1	84	51.5
	여성	30	20.8	65	39.9
	무응답	3	2.1	14	8.6
연령별	20대	14	9.7	12	7.4
	30대	56	38.9	47	28.8
	40대	58	40.3	72	44.2
	50대	12	8.3	18	11.0
	무응답	4	2.8	14	8.6

2. 의연금 지원에 관한 실증분석

2.1 의연금의 신속성 및 공평성에 대한 이재민과 공무원의 인식 비교

의연금의 지원 원칙에 대해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 79호)」에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의연금의 사용목적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 원칙으로서 공익성, 투명성, 기탁자의 의도반영, 공평성, 효율성(지원효과), 신속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12].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성과 공평성을 살펴보면, 첫째, 공평성이란 지급하는 의연금규모는 재산규모, 가족 수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이재민에게 포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함을 말한다. 둘째, 신속성이란 의연금은 지급절차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기 전에, 신속하게 배분함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2.1.1 의연금의 신속성

2009년 7월 호우피해에 관련하여 의연금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연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재난관리 공무원의 경우 79.5%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13.6%가 보통, 6.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의연금 담당 공무원은 61.9%가 신속하게 지원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23.8%가 보통, 14.3%가 신속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재민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7.9%가 신속하다고 응답했고 26%가 보통, 16.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의연금의 신속성에 대한 이재민, 재난관리자, 의연금 담당자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 pearson χ^2 의 값이 24.435(자유도 10)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표 4.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

구분		이재민	재난 관리 공무원	의연금 담당 공무원	합계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	그렇다	빈도	176	35	52	263
		%	57.9	79.5	61.9	60.9
	보통이다	빈도	79	6	20	105
		%	26.0	13.6	23.8	24.3
	그렇지 않다	빈도	49	3	12	64
		%	16.1	6.8	14.3	14.8
	합계	빈도	304	44	84	432
		%	100.0	100.0	100.0	100.0
	$\chi^2(df)$			24.435(10), $p = .007$		

2.1.2 의연금의 공정성

2009년 7월 호우피해로 지원된 의연금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보았다. 재난관리 공무원의 경우 93.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4.5%가 보통, 2.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의연금 담당 공무원은 71.4%가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20.2%가 보통, 8.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재민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3.4%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23.3%가 보통, 33.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의연금 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이재민, 재난관리자, 의연금 담당자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 pearson χ^2 의 값이 88.417(자유도 10)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표 5. 의연금 지원의 공정성

구분			이재민	재난 관리 공무원	의연금 담당 공무원	합계	
의연금 지원의 공정성	그렇다	빈도	108	41	60	209	
		%	43.4	93.2	71.4	55.4	
	보통이다	빈도	58	2	17	77	
		%	23.3	4.5	20.2	20.4	
	그렇지 않다	빈도	83	1	7	91	
		%	33.3	2.3	8.3	24.1	
	합계	빈도	249	44	84	377	
		%	100.0	100.0	100.0	100.0	
	$\chi^2(df)$			88.417(10), $p=0.000$			

2.2 소결 및 시사점

2009년 7월 호우피해에 관련하여 의연금 지원경험이 있는 공무원들과 의연금을 지원받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의연금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의 경우 79.5%가, 의연금 담당 공무원은 61.9%가, 이재민은 57.9%가 신속하게 지원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의연금의 공정성에 대한 견해는, 재난관리 공무원의 경우, 93.2%, 의연금 담당 공무원의 71.4%, 이재민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3.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재난관리 공무원, 의연금 담당 공무원, 이재민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재해의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재난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의연금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의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9년 7월 호우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피해조사 및 의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첫째,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79.5%), 의연금 담당 공무원(61.9%), 이재민(57.9%)의 순서로 의연금의 지원이 신속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 집단 간의 인식차이는 유의($p<.005$)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연금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93.2%), 의연금 담당 공무원(71.4%), 이재민(43.4%)의 순으로 나타났고, 세 집단 간의 인식차이는 유의($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의연금을 지원 받는 이재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재민의 경우 신속성(57.9%)보다는 공정성(43.4%)에 더 낮은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재민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수준 판정을 위한 객관적 판단기준의 마련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피해수준을 정밀하게 판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해이재민의 의연금 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을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의연금의 지원 대상과 기준이 재난지원금의 대상자와 기준과 유사하여 수혜자인 재해이재민이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원받은 금품의 재원이 국고인지 국민이 기부한 성금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동시에 재난지원금은 복구비 지원이며, 의연금은 위로금지원이라는 지원의 목적이 각기 상이하다는 것을 인지하

지 못하고 있다.

이재민의 의연금 지원에 대한 인식제고 특히, 지원의 신속성과 공정성의 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피해조사기준과 피해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해의 경우 정밀한 피해정도의 파악이 신속한 구호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재해의연금의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서로 상충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이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관리 정책과 인위재난정책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pp.165-185, 2002.

[2] Oxfam International, "Climate Wrongs and Human Rights: Putting people at the heart of climate-change policy," Oxfam Briefing Paper, 2008.

[3]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9 재해연보, 2010.

[4] 소방방재청, 2009 재난연감, pp.599-657, 2010

[5] 소방방재청, 2008년 주요행정자료 및 통계, 2008.

[6] 홍영교, 김태연, 이은애, 김도훈, “재해구호품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연구: 재해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보, 제18권, 제4호, pp.375-400, 2009.

[7] 이재은, “한국의 이재민 구호와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 개선 방향: 미국과 일본이 주는 시사점”, 현대사회와 행정, 제18권, 제3호, pp.229-262, 2008.

[8] <http://www.korean.go.kr/>(검색일, 2010.3.9).

[9] 이재은·유현정, “재해구호에서의 의연금 지원에 관한 실증분석: 기탁자와 이재민의 기대·성과 만족도 인식 비교”, 국정관리연구, 제4권, 제1호, pp.131-156, 2009.

[10] <http://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29> (검색일, 2010.7.7)

[11] http://www.nema.go.kr/nema_cms_iba/show_

[nema/board/law/list.jsp?c_relation=0&check_the_num=159&check_the_code=2&check_up_num=145](http://www.nema.go.kr/nema/board/law/list.jsp?c_relation=0&check_the_num=159&check_the_code=2&check_up_num=145) (검색일, 2010.7.7)

[12] 양기근, 이은애,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 연구: 의연금 지원대상자, 지급시차, 지원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 제2호, pp.181-197, 2010.

저 자 소 개

이 은 애(Eun-Ae Lee)

정회원



- 1988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학사)
- 2006년 8월 :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비정부기구조 석사)
- 2010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현재 : 전국재해구호협회 배분사무국 탐강 <관심분야> : 재해구호, 재난관리, 자원봉사

양 기 근(Gi-Geun Yang)

정회원



- 1993년 2월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치학학사)
- 2000년 2월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4년 8월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재난관리, 소방정책, 정책 평가 및 분석